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11004-200000001916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 장 성 호

아동권리협약으로 본 국내 아동복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018년 2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안 혜 진

아동권리협약으로 본 국내 아동복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a way to improve Domestic Child Welfare System based 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안 혜 진

안혜진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2017년 12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목 차

표목차 ····· iii
그림목차 ····· v
국문초록 ····· vi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 제기 ····· 1
제2절 연구 목적 ····· 3
제3절 연구 방법 ····· 4

제2장 아동과 아동권리 ····· 5
제1절 아동의 정의 ····· 5
제2절 아동권리 ····· 8
1. 아동권리의 정의 ····· 8
2. 아동권리의 성립 배경 ····· 8

제3장 아동권리의 발달 ····· 10
제1절 아동 인권 국제조약의 역사 ····· 11
1. 아동권리선언 ····· 11
2. 제네바 선언 ····· 11
3. 유엔아동권리선언 ····· 12
4. 유엔아동권리협약 ····· 12
제2절 국제조약의 의미 ····· 13

제4장 아동권리협약과 국내 이행현황 ····· 15
제1절 국가보고서 분석 ····· 15
1. 일반이행조치 ····· 18
2. 아동의 정의 ····· 23
3. 일반원칙 ····· 24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 31
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36
6. 기초보건과 복지 ····· 40
7. 교육・여가・문화적 활동 ····· 44
8. 특별보호 조치 ····· 45
제2절 국내 아동복지 정책 현황 ····· 47

제5장 결론 ····· 53

참고문헌 ····· 62
영문요약 ····· 66

표 목 차

<표1> 국내법 상 아동관련 법률의 기준 연령 ····· 6
<표2> 아동권리의 발달 연대표 ····· 10
<표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 ····· 16
<표4> 아동권리영역 및 내용 ····· 17
<표5>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내용 ····· 29
<표6> 일반이행조치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 Ⅰ ····· 20
<표7> 일반이행조치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 Ⅱ ····· 21
<표8> 아동의 정의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 ····· 23
<표9> 일반원칙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차별금지) ····· 25
<표10> 일반원칙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리) ····· 28
<표11> 일반원칙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 29
<표12> 일반원칙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아동의 의견존중) ····· 30
<표13>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이름과 국적) ····· 31
<표14>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신분의 유지) ····· 32
<표15>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표현의 자유) ····· 33
<표16>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34
<표17>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
(결사 및 집회의 자유) ····· 35
<표18>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
(고문 및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 35
<표19> 가정환경과 대안양육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
(부모의 지도와 책임) ····· 36

<표20> 가정환경과 대안양육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
(부모로부터의 분리) ····· 38
<표21> 가정환경과 대안양육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39
<표22> 가정환경과 대안양육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입양) ····· 40
<표23> 기초보건과 복지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생존 및 발달) ····· 41
<표24> 기초보건과 복지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장애아동) ····· 42
<표25> 기초보건과 복지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 43
<표26> 교육・여가・문화적 활동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교육) ····· 44
<표27> 특별보호 조치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
(법적 분쟁상의 아동) ····· 46
<표28> 아동복지법 제정 및 개정 현황 (2011~2016) ····· 47
<표29> 국내 아동복지 관련 법 ····· 57

그 림 목 차

<그림1> 결혼이민자, 인지・귀화자 현황 ····· 26
<그림2>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26
<그림3> 아동권리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 성인 ····· 59
<그림4> 아동권리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 아동 ····· 59
<그림5> 아동의 아동권리교육 경험과 아동권리 교육경험 장소 ····· 60

국문초록

아동권리협약으로 본 국내 아동복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 200여 년이 지나서야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이 만들어졌다. 그 이전까지 아동은 약자의 축에 속해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다. 1989년에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한국이 비준한 지 올해로 26주년이 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6년 동안 아동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아동권리협약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천부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동은 단순히 아동이 아닌 어른의 과거이며 미래의 어른이다. 국내 복지 분야에서 비교적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인 8개의 영역을 분석틀로 하여 네 차례의 국가보고서를 비교·분석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으로 인해 발전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과 향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내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네 차례의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법으로서 국내의 아동복지 관련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의 제·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조항은 의무사항의 성격보다 권고조항이 많기 때문에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든든한 법적인 장치가 부족하다. 보다 현실적으로 아동이 권리를 보장

받으려면 아동권리협약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아동 현실에 맞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국가 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국내 이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누리기에는 선별적인 정책이 많았다. 아동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다.

주제어 :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 아동권리, 아동권리증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당신의 권리는 존중받고 있는가? 당신의 권리를 위해 당신과 국가는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성인인 대다수 국민들조차 대답하지 못한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인종, 피부색, 종교, 재산, 출생, 기타 신분 등에 대한 차별 없이 권리와 자유를 인간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가진다. 그 '모든 국민' 에 해당하는 '아동'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특히 성인들과 같이 국제인권규약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 보장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아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권리와 보호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1959). 인간의 권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성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국민 신문고에 투고, 언론에 제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등 본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힘쓴다. 하지만 힘이 없는 아동은 그렇지 않다. 아동은 참정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의 직접적인 도움이나 국가적인 정책 없이는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국가적인 정책 역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동에 관련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그만큼 아동의 권리는 성인들이 이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중요성을 인식하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 권리에 대해서는 생명권이나 보호권, 발달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인식은 강하지만 아동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시대가 변하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

기 시작했고 아동을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동의 인권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인권조약의 권리주체이며, 동시에 보호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아동은 어른의 소유물이라는 인식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것에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은 국제협약으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국제협약은 강제성은 없으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유엔은 해당 국가에 대하여 관련법의 개정과 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권고한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며, 해당 국가의 NGO 단체들과 협력하여 협약된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한다(유엔, 2005). 유엔의 권고 사항에 따라 5년마다 국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으로 우리나라는 올해 2017년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1991년 아동권리협약 비준 후 아동 관련 국내법이 바뀐 것에는 아동권리협약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26년간 다양한 방면에서 아동 권익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1991년 비준 당시 유보조항이 여전히 존재하며, 대한민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하위권,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최고인 오명을 쓰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통사회의 유교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동은 부모나 스승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분위기로 가정이나 학교 등 사회 곳곳에서 아동의 권리는 무시당하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에 대한 개념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협약국으로서 협약을 이행할 의무와 함께 아동권리에 대해 국가적 홍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권리에 대한 개개인의 관심이 늘어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동에 대한 권리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

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했기에 지난 26년간 아동인권, 복지, 교육, 문화 아동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쳐왔고 발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국내 아동복지 발달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2절 연구목적

이 연구는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은 국제법으로써의 효력을 발휘하며 각국의 아동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국내 법률을 제·개정할 때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다(외교통상부, 2008).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은 국제법으로써 아동 관련 국내법 제·개정에 많은 비중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론에서는 아동의 정의와 아동권리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아동권리의 역사와 아동 인권과 관련된 국제조약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아동과 아동권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아동권리의 발달에 대해 다루며 아동권리협약을 있게 한 아동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역사에 대해 다룰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갖는 의미는 국제법으로써의 효력을 발휘하며 국내법을 바뀌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다루겠다. 제4장에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권

고문과 그에 대한 우리나라 제1·2차, 제3·4차 국가 보고서 및 제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자료를 통해 국내 이행 상황을 알아보겠다. 더불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국내법 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겠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위의 연구를 정리하고 앞 장을 통해 본 국내 아동복지의 발전 중 어떤 점이 미비한지 짚어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내용과 함께 1991년 비준 이후 작성된 제1·2차 국가 보고서(1994)(1999)와 제3·4차 통합 국가 보고서(대한민국 정부, 2008), 제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보건복지부, 2017)를 비교 분석하며 이행상황을 살펴보고 2000년대 아동복지법 개정 내용을 분석자료로 한다.

분석틀로는 '일반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기초보건과 복지, 교육·여가·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로 8가지 영역으로 하고자 한다. 8가지 영역을 두고 아동권리협약의 세부 조항들을 살펴보고 각 권고 사항 및 제1·2차,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제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자료에 나타난 국내 이행 현황과 해당하는 아동복지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제2장 아동과 아동권리

제1절 아동의 정의

국내의 현행 아동 관련 법 체계는 그 목적과 정책 내용에 따라 다양한 연령 기준과 용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동을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법은 「아동복지법」이다. 이 법률 제3조1호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와 마찬가지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되어 있던 결혼할 수 있는 최소연령의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민법을 개정하였다. 민법(2007.12.21.) 제807조에 따라 여자 18세, 남자 18세로 혼인 최소연령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동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고 있다. 2011년 3월 민법을 개정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었는데, 이것은 청소년의 성 조숙화에 따라 성년의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아동권리를 확대한 결과이다.

'아동'과 함께 혼용되고 있는 용어 및 개념은 '청소년'이며, 가장 대표적인 관련 법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민법'은 성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미성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령기준은 19세 미만이다. 이처럼 아동의 정의에 대한 연령규정은 기준과 범위가 일관성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사전적 의미 혹은 사회 통념상으로는 아동이 초등학생 학령기(만6세~12세까지)를, 청소년이 중등학생 연령기(13세~18세)로 통칭되고 있어 그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1> 국내법 상 아동관련 법률의 기준 연령

용어		기준연령	법률
아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청소년		9～24세	청소년기본법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입양 특례법
미성년자		19세 미만	민법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형법
소년	소년	19세 미만	소년법
	촉법소년	10세～14세 미만	
	우범소년	10세 이상	
영유아	영유아	출생 후 6년 미만	모자 보건법
	신생아	출생 후 28일	
영아		24개월 이하	아이돌봄지원법
유아		3세～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교육법
영유아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보육법
아동		18세 미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		18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어린이		13세 미만	도로교통법

표 4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보건복지부, 2017, p.110.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동의 개념이 하나로 정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법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미성년을 19세 미만으로, [영유아보육법] 에서는 6세 미만의 미취학 연령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에서는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아동은 15세 미만인 자가 된다. [근로자기준법]에서는 연소자를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어 연소자에 대해 취업 업종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아동 관련법이나 연령 기준으로 구분한 각 법령에는 대상 아동에 대한 호칭이 서로 다르고, 지원 대상자의 중복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여 정책과 서비스가 효율적으

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즉,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로 되어 있지만 각 법률의 취지에 따라 만 6세, 만 12세, 만 13세, 만 14세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김이영, 2017).

국제법상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협약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정의와 연령이 같지만, 국가마다 문화적 차이 등에 의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아동의 정의에 대한 문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지던 초기의 작업에서 중요한 논점이었다. 협약의 본문에 표현된 아동의 정의 '사람(human being)'에 '태아'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초안에 아동은 '출생 시부터'(from the moment of his birth)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라는 규정에서 '출생 시부터'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협약에서 문구를 삭제하게 되었다(Considerations Working Group, 1980). 후에 협약의 전문에는 아동은 '출생전후를 막론하고'라고 규정하여 태아도 아동의 정의에 포함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본문에서 태아의 권리가 명확히 규정되어있지는 않고 있다. 당사국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는 태아의 권리주체성을 당사국 각각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762조, 제998조, 제1000조제3항, 제1064조'에 따르면 태아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제2절 아동권리

1. 아동권리의 정의

아동은 일반적으로 성인과 비교했을 때,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주장하는 관점은 권리란 의무를 수반하는 것인데, 아동은 성인과 같은 권리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관점이다(O'neill, 1992). 그러나 권리라는 것은 그 형태나 의미, 종류 등과 관계없이 인간 존엄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며, 아동의 권리 역시 출생과 마찬가지로 누리는 권리의 천부성 및 보편성을 근거로 한다. 특히 천부성은, 권리를 가진 자가 성인처럼 힘을 가지거나, 청구행위를 할 능력이 있어야만 권리를 가진다는 전통적인 권리설을 부정하면서, 아동도 권리의 주체적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김이영, 2017).

아동의 권리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보통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 여부에 대한 의미, 둘째는 아동의 권리가 아동을 위한 사회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아동 자신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이다(김춘경 외, 2010).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부모나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도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권리 주체이자 보호 대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아동권리의 성립 배경

아동권리는 인권에서부터 그 의미가 시작된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로 이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한다. 인간은 권리를 가

진다. 권리의 종류로 재산권, 청구권, 시민권 등이 있으며, 이는 단순히 성인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 또한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인권은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근대시민 헌법적 인권보장 제도가 최초로 등장하며 인권의 추상적인 원칙이 나타 있다. 미국의 독립선언은 인간이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신에 의해 부여받았으며, 정부는 그 권리의 양도를 위해 피통치자들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입법권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라는 개념과 이것이 침해당할 경우를 대비한 인민의 저항권과 혁명권 등을 인정하였다. 프랑스 인권선언(1789)에도 입법권에 대항할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로서 재산권, 정신 활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을 보장하였으며, 정부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설정된 것이 명시되어 있고, 그 정부의 원리로서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 나타나 있다(석인선, 1995).

이처럼 미국과 프랑스의 독립선언과 인권선언에서 인간의 권리라는 중요한 원칙을 선언하였지만, 이 역시도 시대적 배경 때문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족이나 남성, 성인 그리고 백인에게 한정되어 보장되었다. 여성 역시도 사회적 약자였고 아동, 청소년 흑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동의 권리를 위한 최초의 국제적 선언은 1922년 영국의 아동복리회(Save the Children Fund)를 창설한 에글렌타인 젭(Eglantyne Jebb)에 의해 작성된 '제네바 아동권리선언'(1924) 이다.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전쟁을 통해 고통받는 아동의 치유와 구호에 힘쓰며, 아동이 자신을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1959년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여 출생권, 생존권, 발달권, 행복추구권, 교육권, 여가권을 선언하고 1989년 '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아동 권리를 위한 행동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제3장 아동권리의 발달

<표2> 아동권리의 발달 연대표

연도	주요 사건
1789	인권선언 발표
1924	●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 채택 ● '인류는 가장 좋은 것을 어린이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문에 명시
1946	2차 세계대전 후 전쟁으로 피해 입은 어린이들에게 음식과 옷, 보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유니세프 (유엔아동기금) 창설
1948	'세계인권선언' 채택
1959	유엔에서 '아동권리선언' 채택(10개 조항)
1979	세계 아동의 해 (아동권리선언 채택 20주년 기념)
1989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아동권리협약 채택[1]
1990	각국 대표들이 뉴욕에서 세계아동정상회담을 열어, 어린이의 건강과 교육에 관한 10개년 계획에 합의
1995	11월 20일을 '세계어린이날'로 지정
2000	● 아동권리협약을 보완하는 선택의정서 2개 채택 ● 아동의 무력・충돌・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아동의 매매 ·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
2002	유엔아동특별총회 개최 (아동문제에 관한 주제로 최초의 유엔 특별총회)
2011	아동의 개인청원권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2017	현재 196개 국가가 아동권리협약 비준

표 5 출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15 재구성.

국제사회는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선정하였고, 1990년에 세계아동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보건・영양・교육에 관한 10개년 계획에 합의하였으며, 1995년에 매년 11월 20일을 세계 어린이날로 지정하는 등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 1990년 9월 2일부터 국제인권법으로 효력 발효

제1절 아동 인권 국제조약의 역사

1. 아동권리선언

아동권리선언은 Eglantyne Jebb 여사에 의해 작성되어있으며 5개조로 구성되어있다. 아동권리선언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지만 아동의 권리에 대한 최초의 선언문으로써 의미가 있다. 이 선언은 이후 아동권리 발전에 영향을 주었고 1924년 9월 국제연맹에 의해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으로 채택되었다.

2. 제네바 선언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국제적 선언은 1924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연맹회의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다. 제네바선언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상처와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정부단체 아동구호기근세계연맹(The Save the Children Fund International Union)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2)]

---

2) "모든 나라의 남성과 여성은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종·국적 또는 신념에 관한 어떠한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또한 자신의 의무로서 수락한다."
① 아동에게는 정상적인 발달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수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 굶주린 아동에게는 음식이 제공되어야 하고, 아픈 아동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비행아동은 교정(화)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고아와 집이 없는 부랑아동에게는 주거와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아동은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구제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받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⑤ 아동은 자신의 능력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라서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유엔아동권리선언[3)]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제네바 선언을 개정하여 2개의 조항을 덧붙였고, 1959년 11월 20일에는 전문과 함께 10개조로 된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여 출생권, 생존권, 발달권, 교육권, 행복추구권, 레크레이션권을 선언하였다. 이후 제30주년이 되던 1989년 11월 20일에는 투표 없이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조약은 인권위원회의 10년의 걸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약 54개로 되어있는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린이가 자기의 이름을 소유할 권리,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등을 담고 있으며, 여태까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있던 어린이의 권리를 하나로 통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철수 외, 2009). 아동 권리 선언은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출생의 전후부터 법적인 보호를 포함하여, 다각도로 보살핌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다.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최선이익을 실현하겠다는 국제적 의지의 표현이며, 모든 아동들은 권리적 존재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고,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아동의 복지권이 강조되고 있다(김용하, 2006).

4.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은 어린이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법으로 18세 미만

---

3) 아동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지내며, 자신과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요청하고 있다. 전문(前文) 및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다.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라.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마.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바.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사.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아.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자.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 인간 상호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과 참여를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로 보며,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고 있다. 유엔총회에서 논의된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9월 25일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에 비준하여 12월 20일에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이 조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인권 조약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라면, 해당 정부는 협약이 담고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비준 후 2년 안에 이행 상황에 대한 최초보고서와 매 5년마다 후속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협약은 세계의 모든 아동에게 변화를 제시하는 국제적인 협의로서 아동이 적절한 생활과 보호를 제공받는 세상을 지향하는 사회의 바람을 담고 있다. 둘째, 전통적으로 여러 국제 조약들이 아동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했던 반면,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선언적 내용에만 머물렀던 각종 아동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 국가의 구속력 있는 의무이행이 필요한데, 이행을 강제할 조치가 없어 한편으로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셋째,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정부와 민간 영역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천명하면서, 적극적인 아동의 권리로서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권을 제시하고 있다(이배근, 1997).

제2절 국제조약의 의미

대한민국 헌법 제6조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비준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는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이다. 이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일원론과 이원론 두 가지로 분류한 것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국내 사법부의 판례는 조약이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될 수 있으며,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지닌다는 입장이나, 국회 비동의 조약의 효력에 대한 입장은 불분명 하다(정인섭, 2015). 일원론은 국내법과 국제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질서를 이룬다는 것이고,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 질서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법 질서와 국내법 질서는 각각의 영역으로써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거나 배척하지 않는다. 국제법은 자동으로 국내적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주권 우위에 기초하여 필요할 경우에 해당 국제법을 국내법으로의 변형을 통하여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조약의 효력에 대해서 국내법 중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에 대개 일치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조약에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전광석, 2007).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아동 법률 제·개정 시 아동권리협약의 이념과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아동 관련 법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를 보면 아동권리협약이 가진 국제조약으로써의 힘이 국내법 개정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상의 힘을 가지고 있으나 강제성은 없어 1991년에 유보된 조항이 아직까지 계류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권리협약은 협약 당사국들이 정기적으로 이행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설치하여 협약 이행 여부를 감시·감독하고 있다.

제4장 아동권리협약과 국내 이행현황

제1절 국가보고서 분석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발효된 후 2년 이내에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보장 진전 상황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5년마다 이행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에 비준하였으며, 1994년 제1차 보고서를, 2000년에 제2차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2003년 2월에 제1차 보고서와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선택의정서 권고 사항을 통보 받았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2008년 제3·4차 보고서부터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사일정 지연으로 인해 통합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8). 2017년에는 아동 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담은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아동인권관련 NGO 단체들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와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정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거나, 정부보고서의 보완을 위해 별도의 민간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한국의 NGO 단체들은 1995년 7월에 제1차 민간보고서를, 2002년 6월 제2차 민간보고서를, 2010년 제3·4차 민간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8개의 영역으로 분류했다. 8개의 영역으로는 일반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기초보건과 복지, 교육·여가·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가 있다. 유엔의 지침에 따라 국가 보고서는 8개의 영역에 대하 각 조항과 관련된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1). 8개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표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

번호	영역	세부영역
1	일반이행조치	
2	아동의 정의	
3	일반원칙	• 무차별 원칙(제2조) •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제3조) • 생존과 발달(제6조) • 아동의 견해 존중(제12조)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출생신고와 국적취득(제7조) • 신분 보장(제8조) • 표현의 자유(제13조)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제14조) •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제15조) • 사생활 보호(제16조) • 정보접근(제17조) •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간적 대우와 처벌을 받지 않음(제37조)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부모의 지도(제5조) • 부모의 책임 (제18조1항,2항) • 부모로부터의 분리(제9조) • 가족의 재결합(제10조) • 불법 해외이송과 미귀환(제11조) • 아동양육비 회수(제27조4항) •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제20조) • 유기와 학대(제19조) •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제39조)
6	기초보건과 복지	• 생명권 인정 및 보장(제6조2항) • 장애아동(제23조) • 건강과 의료지원(제24조) •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제26조, 제18조3항) • 생활수준(제27조1항,2항,3항)
7	교육・여가・문화적 활동	• 교육(제28조) • 교육의 목표(제29조) • 여가, 오락 및 문화활동(제31조)
8	특별보호조치	•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보호 -난민아동(제22조) -무력분쟁에 관여된 아동(제38조)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복귀(제39조)

		• 법적 분쟁에 처한 아동보호 -소년사법의 집행(제40조) -자유가 박탈된 아동 (제37조나-라항) -아동에 대한 사형 및 종신형 금지(제37조가항) • 착취 위기에 처한 아동보호 -경제적 착취(제32조) -약물남용(제33조) 성적착취 및 성학대(제34조) -아동약취유인, 매매, 거래(제35조) -다른 형태의 착취(제36조) • 소수민족,원주민보호이동(제30조)

표 6 출처: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1991).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Initial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UN Doc.CRC/C/5. 1991.

<표4> 아동권리영역 및 내용

영역	내용
일반 이행조치	• 당사국의 이행의무 • 협약 홍보 • 국가보고서 활용
아동의 정의	•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 차별금지의 원칙 •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 아동의 의견존중
시민적 권리와 자유	• 국적취득 및 출생신고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 정보 보호 • 정보접근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부모의 지도와 책임 •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아동학대・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복귀
기초보건과 복지	• 장애아동 • 생존 및 발달 • 건강 및 보건서비스 • 사회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 • 생활수준
교육・여가・문화적	• 교육

활동	• 교육의 목표 • 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	• 법적 분쟁 상의 아동 • 착취상황의 아동

표 7 출처: 제1·2차,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재구성.

협약에서 제시한 당사국의 의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실행한 조치들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은 1990년 9월 30일 국제연합아동기금 주관으로 개최된 '어린이를 위한 세계정상회담'에서 채택한 '1990년대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및 발달을 위한 세계정상선언과 행동계획'에 1991년 6월에 서명하였고, 이 행동계획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국 어린이들을 위한 1990년대 행동 프로그램의 작성 및 시행'을 위하여 1992년 2월에 이미 '한국 아동복지 10개년 계획서'를 국제연합에 제출하였다(대한민국정부, 1994).[4] 우리나라의 1994년 제1차 국가보고서와 2000년 제2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아동권리위원회는 1차에서 14개항의 권고 사항을, 2차에서 10개의 장의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다.

1. 일반이행조치

가. 유보조항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던 1991년 당시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3가지의 조항을 유보하여 비준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4) ① 어린이 보건의 향상
② 맑은 물 공급
③ 식품위생과 국민영양
④ 아동교육의 증진
⑤ 모자보건의 향상 및 가족계획
⑥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을 위한 기타 프로그램
1)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무료 보육사업, 2) 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보호, 3) 어린이 전용시설 확충, 4) 장애어린이의 복지증진, 5) 불우어린이 지원

<표5>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내용

제9조3항[5]	아동이 부모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제21조가항[6]	권위 있는 정부당국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양허가제도
제40조나-(5)항[7]	범법행위를 한 아동이 상급사법당국의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 상소권 보장제도

표 8 대한민국 정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최초 보고서』, 외교부, 1994.

제1・2차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유보하고 있는 협약의 조항은, 아동이 인권을 실현함에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소권[8]에 대해서는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유보함을 밝혔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문에서는 한국정부의 노력이 협약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며 입양제도의 유보는 협약의 중요 원칙으로 꼽히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아동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6).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입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이그 협약[9]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지만 제1차 국가보고서와 제2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이행되지 않았다.

5) 제9조3항 :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한 쪽이나 양 쪽 모두로부터 떨어진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6) 제21조가항 :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부모나 친척, 후견인과 관련된 아동의 신분상태를 고려해 입양의 허용여부와 필요한 경우 부모나 친척 등 관계자들이 협의해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동의를 했는가 하는 점을 결정한다.
7) 제40조나-(5)항 :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판결 및 그에 따른 모든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8) 헌법 제110조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에 의해.
9) 헤이그 협약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 1993년에 체결되고 1995년에 발효되어 전 세계적으로 90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며, 그간 우리나라는 주요 입양국 중 유일하게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UN 등 국제사회와 국회가 협약가입을 촉구해 왔다.(보건복지부, 2013)

<표6> 일반이행조치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 Ⅰ

	제 1차 국가보고서	제 2차 국가보고서
유보조항	• 부모의 면접교섭권 보장 유보 • 입양시 관계당국의 허가 규정 유보 • 아동재판에 관한 상소권보장 유보	• 제 1차 보고서와 동일
협약의 홍보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홍보활동	• 홍보책자발간 및 배포 •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국내법 및 정책과의 조화	• 아동복지법의 목적 명시 •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선언 • '1990년 어린이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세계정상선언과 행동계획'에 서명 • 한국아동복지 10개년 계획 UN에 제출	•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개정 • 취업금지연령을 15세 미만으로 조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청소년보호법 제정
협약이행 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	• 보건사회부 가정 복지심의실 산하 아동복지과 •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 교육부, 법무부, 가정법원, 노동부 •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 민간단체 활동	•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건복지과, 여성보건복지과 • 문화관광부 청소년기획과,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수련지도과 • 청소년육성위원회 • 교육부학교정책실 • 법무부, 가정법원 • 청소년보호위원회 • 아동권리조정위원회 정기개최 • 민간단체 활동

표 9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제1·2차 국가보고서를 살펴보면 유보사항 철회를 위한 법적 조치나 노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지 않고, 모니터링 기관도 각 부처별 협약이행을 위

한 활동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표7> 일반이행조치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 Ⅱ

		제 3,4차 국가보고서	제 5,6차 국가보고서
유보조항	부모면접 교섭권	• 부모면접교섭권 인정으로 유보 철회	• 제 3,4차 국가보고서와 동일
	입양 허가제	• 부분적인 입양허가제 도입	• 2011년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으로 유보 철회절차
	상소권	• 유보	• 유보의 적극적 논의
협약의 홍보		• 공공캠페인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교육강화 • 5월1-7일 어린이주간 • 아동권리지표 통계수집 • 국가보고서 활용	•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정책개선 권고를 언론보도 • 아동권리헌장 제정 • 청소년희망센터 토론회 및 포럼 개최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결과 포함된 '청소년 통계' 통계청 공식자료 등재
국내법 및 정책과의 조화		•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소년원법, 청소년 기본법, 민법, 학교보건법, 소년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개정 • 유아교육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성매매 및 성폭력 방지 관련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 협약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 청소년 미혼모 지원 법률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률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 아동권리 관련 부처 간 연계 강화 •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년~2017년) 이행 •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년~2021년)권고안

	• 학교폭력 예방관련법, 가족관계법,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정부에 제출
협약이행 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국가인권위원회 • 법무부 인권국 신설 • 민간단체 활동 •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가족부	• 아동권리위원회 설치 • 아동・청소년인권팀 신설 • 아동권리위원장 및 위원 지정

표 10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제3・4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이 인정되어 유보사항이 철회되었다. 기존의 조항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으나, 2007년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에 대한 자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다. 이것은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걸맞은 개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부모가 이혼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역시 부부가 협의 이혼할 경우에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지만 협의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혼 자녀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제21조 입양허가제의 경우 기존 민법상에서 입양은 별도의 법원 허가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입양 신고로 가능했지만 2005년 민법 개정을 통해 친양자제도를 도입하여 부분적으로 입양허가제가 시행되었다. 입양허가제도는 입양에 대한 국가감시제도로써 입양아동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입양 촉진이 필요한 국내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아동권리협약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유보철회는 국내 입양 현실과 국민 인식 변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협약의 조항을 충족시키기 미흡한 조치이다(대한민국정부, 2008). 그러나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입양특례법」, 「민법」 및「가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 '입양숙려제', '양부모자격강화', '파양조건 엄격화', '13세 이상 입양아동의 의견존중' 등 새로운 입양제도가 도입되어 입양되는 아동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

화되었다. 또한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권고했던 ‘헤이그협약’ 가입을 이행하여 2013년 5월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서명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2. 아동의 정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나라마다 아동의 연령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같은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혼인연령의 경우 남아와 여아의 연령이 다른 것에 대해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권고받아 남·여 모두 만 18세로 조정하여 제3·4차 국가보고서에서 보고하였다. 2011년 민법에서는 성년에 이르는 나이를 만 19세로 낮추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동에 대한 정의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어 비효율적인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에서는 통합적인 아동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2010).

<표8> 아동의 정의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아동의 정의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민법	20세 미만
	생활보호법	18세 미만		
	성년규정	만 20세		
	근로기준법	18세 미만		
	의무교육	초등교육:6년 중등교육:3년		
	형법	14세 미만 자의 행위처벌금		

		지		
	소년법	20세미만		
	혼인연령	남:18세,여:16세		
	형사소송법	16세 미만자 선서 무능력자로 규정	헌법	연소자 근로 특별 보호 명시
	미성년자보호법	20세 미만	근로기준법	18세 미만, 15세 미만자 취업금지
	운전면허 취득	18세	교육기본법	의무교육 15세 미만
	원동기면허	16세 이상	청소년보호법	19세 미만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혼인연령 - 남녀 동일 18세		민법 - 19세 미만	

표 11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3. 일반원칙

일반원칙에는 무차별 원칙(제2조),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제3조), 생존과 발달(제6조), 아동의 견해 존중(제12조) 등이 있다.

가. 차별금지

제1・2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혼외자에 대한 차별을 주로 다뤘을 뿐, 지역적인 차별이나 성별에 의한 차별, 빈곤아동에 관한 차별,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차별,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인종차별에 대하여는 '없음'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종차별금지에 대해 명문화하여 제3・4차 국가보고서에서 보고하였다. 제3・4차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장애인, 불법체류자 아동, 다문화 및 새터민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였다. 제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빈곤아동 지원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표9> 일반원칙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차별금지)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차별 금지	• 헌법: 아동차별금지 규정. 제11조1항, 제11조2항, 제13조3항 • 혼인 외 출생자 금지 명시 • 호주승계인 결정순위, 호적법 출생 신고시 혼외출생자 명시 • 인종차별, 민족간의 분쟁 없음 • 남아선호사상 • 성차별 나타나지 않음	• 아동의 부당한 차별 일체금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만 무차별원칙 적용 • 혼인 외 출생자 재산상속순위 차별 없음 • 호주승계 시 혼인중 출생자 우선 • 인종차별, 민족간의 분쟁 나타나지 않음 • 남아선호관 존재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 2007년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개정 • 2007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 장애인차별금지 관련법 • 특수교육관련법 • 불법체류자 아동 의무교육 • 인종차별금지조항 명문화 • 다문화 및 새터민 아동지원	• 차별금지법안 추진중 •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 • 한부모 가족지원법 개정 •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표 12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오늘날 다문화가족이 점점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차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1> 결혼이민자, 인지·귀화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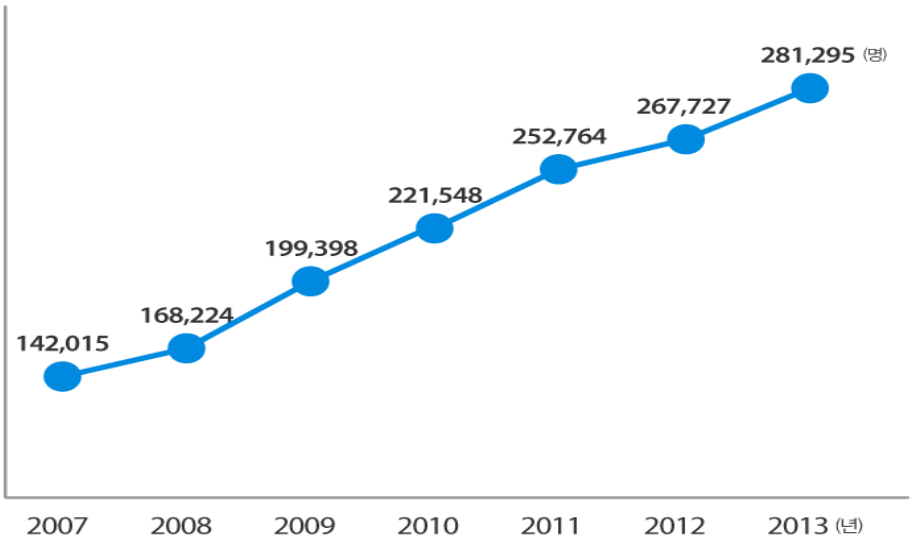

그림 2 출처: 대한민국 정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정책공감, 안전행정부, 2013.

<그림2>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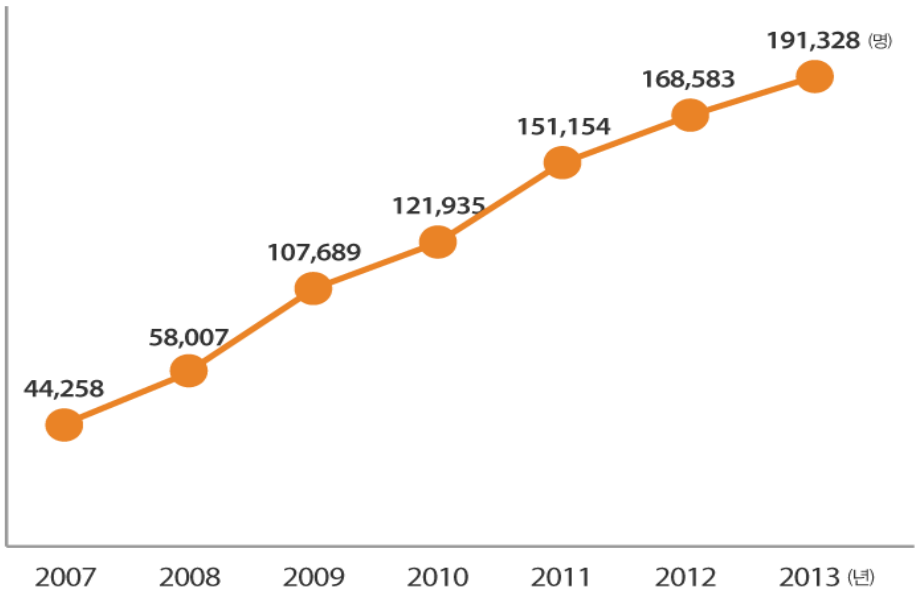

그림 3 출처: 대한민국 정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정책공감, 안전행정부, 2013.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남들과는 다른 외모로 인해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소외당하거나 많은 편견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다양한 형태이며 아동 또한 많은 숫자이다. 아동의 경우 다문화 자녀의 숫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과 편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다문화 가정의 만 9세~ 24세 자녀는 82,476명으로 2012년 66,536명에 비해 24% 증가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 중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9.4%로 2012년에 비해 4.4% p 감소했으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응답이 64.7%로 가장 많았다(황정원, 2016).

우리 정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는 현실에 따라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개선법'을 제정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2008년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계획에는 외국인 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통한 다문화 증진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황정원, 2016).

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에 관하여 제1차 국가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못하였고 제2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소년법의 청소년 강력범죄의 형을 무기징역에서 법정 최고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낮추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의 사망 수가 선진국과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권고문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보고하였지만, 종합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하지는 못하였다. 제3・4차 국가보고서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학교폭력예방에 힘썼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이 위험한 수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권고받아 2011년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

률안 제정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자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조사 연구기관을 통해 자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국가가 자살예방을 위해 국민의 인식 개선에 힘쓰고 더 나아가 사전 예방 시책들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실시하며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교육과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표10> 일반원칙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리)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 헌법 제10조: 아동의 존엄성과 기본 인권보장 • 소년법 제59조: 18세 미만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지 않고 15년 유기징역으로 감면	• 아동복지법 제1조 •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사망 줄이는 정책 강화 • 소년법 제59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4조) 18세미만자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한 경우 20년 유기징역형으로 감면 • 청소년보호법 제1조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 2003년을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 •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 2005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수립	• 자살예방사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설치 •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발표 •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표 13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다.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원칙 중 하나이다. 제1・2

차 국가보고서에서 아동복지법이나 기타 아동이 관련된 정책의 수립에 대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제3·4차 국가보고서에서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며 유보조항을 철회하며 보다 아동의 권리에 한 발 다가섰다.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이 나타났다.

<표11> 일반원칙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 부모에게 아동양육의 일차적 책임 부여 • 아동복지법 제3조2항	• 청소년보호법 제3조2항 • 아동관련 정책수립 시 아동 최우선의 원칙 고려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 2007년 드림스타트운동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지원 • 가족지원정책을 통한 아동 지원 강화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 •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 • 출원생사회정착 지원센터 • 아동친화도시만들기

표 14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라. 아동의 의견존중

아동의 의견존중에 대한 제1차, 제2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주로 부모 이혼 시 아동의 친권과 입양 아동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15세 이상의 아동이 입양되거나 그의 부모가 이혼할 경우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고 존중하여 친권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입양에 동의 또는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아동은 어른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분위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보다도 우리나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제3·4차,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과 제도를 보고하였는데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의 의사를 받아들이도록 규정하거나(대한민국 정부, 2008) 아동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입법화한 점이다. 그러나 관련 법마다 아동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이 다르고, 규정을 위반할 시에 주어지는 처벌규정이 없어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동복지법이나 관련법의 규정이 단순히 원칙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규정들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민진홍, 2011).

<표12> 일반원칙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아동의 의견존중)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아동의 의견존중	• 친권자 친권 남용, 재산 대리권, 친권 상실 또는 상실 선고 청구 • 민법 제777조: 친권 상실의 신고 • 친권자의 대리 행위 시 자녀의 동의 • 이혼시 15세 이상 자녀 의견 고려 • 15세 이상 아동 입양시 동의 필요	• 민법 제924조: 친권 상실 선고 규정 • 민법 제920조 •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15세 이상 자녀의 경우 부모 이혼시 친권행사자 지정 가능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2항: 15세 이상 아동 입양시 동의 필요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3조 • 청소년기본법 제5조, 제12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2016년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2008년 결의된 내용 입법화 • 청소년기본법 개정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아동권리헌장 제정 • 아동복지법 제11조2 신설

표 15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 이름과 국적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의 이름과 국적에서는 아동의 국적 취득과 상실, 호적법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호주제로 인해 출생지주의인 국적법을 따르는 국가의 남자와 우리나라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이 무국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제2차 보고서에서는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모의 국적 취득과 호적에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표13>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이름과 국적)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이름과 국적	• 민법 제781조1항: 아동의 입적 • 호적법 제49조: 출생 신고 의무 • 출생신고서 제출 • 국적법 제2조: 혼인 외의 출생자, 기아 및 무국적자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아동의 국적 취득 보장 • 한국인 여자와 출생지주의 국적법에 따르는 국가의 남자 사이에 태어난 아동은 무국적 가증성이 있음	• 민법 제781조1항~3항: 부가 외국인인 경우, 모의 국적 취득과 호적 등재 가능 • 국적법 제2조1항: 부모 양계혈통주의 채택, 아동의 무국적 방지 • 호적법 제49조제2항: 외국인 부모의 경우 성명, 국적 기재를 통한 자녀의 출생관계 등재 가능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 국적법상 혈통주의와 속인주의 원칙을 고수 • 2007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

표 16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나. 신분의 유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호적제도가 존재했다. 호적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호적법을 개선 및 폐지하여 아동의 신분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에 등재된다.

<표14>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신분의 유지)

<table>
<tr><th></th><th>제1차 국가보고서</th><th>제2차 국가보고서</th></tr>
<tr><td rowspan="3">신분의 유지</td><td>• 호적제도 병폐잔존
• 국적상실사유
• 국적상실경우취득방법
• 혼인 외의 출생자
• 인지청구의 소 제기 가능</td><td>• 호적제도폐해
• 국적상실사유: 1차 보고서 내용과 동일
• 국적법(제8조,제12조,제7호 등), 1997년 12월 개정된 국적법(제10조제2항)예외 규정을 신설, 아동의 신분박탈방지
• 종전국적법(제8조제2항, 제14조제2항) 개정시 동 조항 폐지
• 혼인외의출생자 인지청구의 소 제기 가능</td></tr>
<tr><th>제3・4차 국가보고서</th><th>제5・6차 국가보고서</th></tr>
<tr><td>• 아동의 신분은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에 등재 됨
• 호주제 폐지
• 부성주의 원칙 수정
• 가족별 호적제에서 개인별 호적제로 개정</td><td>• -</td></tr>
</table>

표 17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다. 표현의 자유

아동의 의사존중이 이뤄지려면 기본적으로 아동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동의 자기 의사 표현에 인색하다. 제1차, 제2차 보고서에서 아동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언급했지만 학교 내에서 자유로운 표현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 제3・4차와 제5・6차 보고서에서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많은 부분 노력을 기울여 일정 부분 개선의 여지가 보였다.

<표15>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표현의 자유)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표현의 자유	• 헌법 제21조1항: 언론과 출판의 자유 • 헌법 제22조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민법 제751조1: 타인의 자유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헌법 제76조: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한 제한 • 제77조3항: 비상계엄 선포시 언론 출판 자유에 대한 특별 조치	• 헌법에 충실하게 반영 • 헌법 제21조4항 언론, 출판에 의한 권리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노력	• 2013년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발간 • 학생인권조례 제정한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의 학교규칙 모니터링 •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권' 내용 포함하여 인권보장의 중요성 강조

표 18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보고서(2015)에 따르면, 학교에서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은 78.1%(그런 편이다 52%, 매우 그렇다 26.1%),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은 21.9%(전혀 그렇지 않다 4.9%, 그렇지 않은 편이다17%)로 파악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라.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에 자유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서는 해당 헌법을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 아동의 경우 의사존중이 자유롭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가 낮다 보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학교에 의해 종교・사상을 강요받는 일

이 많다. 특정 종교를 재단으로 하는 학교에서는 필수적으로 종교 과목을 들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으면 성적에 불이익이 주는 경우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종교행사 및 종교수업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1인 시위에 나서는 사례들도 있었다. 제3·4차 국가보고서에서 종교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였지만 제5·6차 보고서에서는 헌법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과목에 종교 과목을 편성할 때는 대체과목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표16>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 • 헌법 제21조:언론, 출판의 자유 • 민법 제913조3: 부모나 법정후견인은 자녀에게 종교교육, 도덕적 교육을 시킬 수 있음 • 부모의 신앙을 강요할 수 없음 •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	• 헌법 제37조제2항 필요한 경우 표현의 자유 제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 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함	• 헌법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종교행사 참여 강요 금지 • 종교과목 편성시 대체과목 마련

표 19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마.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의 제1차, 제2차 국가보고서에서 평화적 집회를 허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가 보안상의 문제로 정치 활동 및 사상의 자유에도 제한을 두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아동의 기본적인 자유권 제한에 대해 지적하였다.

<표17>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결사 및 집회의 자유)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결사 및 집회의 자유	• 헌법 제21조1항: 집회, 결사의 자유규정 • 헌법 제21조2항: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 인정하지 않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1항: 평화적 집회보장	• 제1차 국가보고서와 동일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 학생자치활동 권장 • 학생생활규정 민주적으로 개정	• 2013년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발간 • 학생인권조례 제정한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의 학교규칙 모니터링 •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권' 내용 포함하여 인권 보장의 중요성 강조

표 20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바. 고문 및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고문 및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내용은 '아동의 생명 및 생존발달 보고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표18>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고문 및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고문 및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 헌법 제12조2항 고문방지 및 진술 강요금지 • 헌법 제12조7항 고문 또는 잔혹한 취급이나 형벌금지 • 헌법 제125조 재판, 검찰, 경찰 등의 직무를 행하는 자의	• 사형금지연령 18세 미만 • 18세 미만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시 15년 유기징역형으로 대신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금지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 수사과정의 가혹행위 금지를 위한 CCTV를 통해 녹화 실시 • 2007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재정을 통해 형집행도구를 보호장비로 바꾸었다.	• -

표 21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가정환경과 대양양육 영역에서는 주로 자녀 양육에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가. 부모의 지도와 책임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친권'을 언급하고 있는데 '친권에 복종한다'라는 민법 조항이 명령 복종의 권위적인 관계이자 자녀에 대한 지배권의 의미로 비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 의무를 말한다(민법 제913조)고 하였다. 제3·4차 국가보고서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제도들이 마련되었고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주로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에 사회적 관심이 몰리며 육아휴직과 영유아 무상교육의 영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일·가정 양립 지원에 힘쓰고 있다.

<표19> 가정환경과 대안양육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부모의 지도와 책임)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부모의 지도와 책임	• 아동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요보호 아동과 일반아	• 민법 제909조1항 : 친권의 본질이 자녀에 대한 지배

	동의 건전 유성 • 민법 제909조1항 : 부모를 친권자로 규정 • 민법 제909조2항 :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 행사토록 규정 • 민법 제913조3항 : 부모에게 자녀의 보호 및 부양의 의무 부여 • 모자복지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유아보육법, 생활보호법의 목적 소개	권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표현 개정 방침. • 개정 민법가정법원이 아동의 후견에 대한 책임규정 • 기타 1차보고서 설명과 동일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 자녀양육권과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통하여 가족의 지원을 강화하며, 동시에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 • 5년마다 건강가정 기본 계획 수립 •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 • 육아휴직 급여인상, 남성 육아휴직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전계층 무상교육・보육 실시

표 22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나. 부모로부터의 분리

제1차, 제2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아동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최초 보고서에서 유보했던 조항으로 아동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15세 아동의 의사 표명권이 보장되지 않던 제1차, 제2차 국가보고서에 반해 제3・4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며 유보조항을 철회하였다.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친권이나 양육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제시 연령을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을 보고하였으나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에 있어서 구체적인 절차나 과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한계 역시 보고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표20> 가정환경과 대안양육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부모로부터의 분리)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부모로부터의 분리	• 민법 제924조4항 : 친권상실규정 • 민법 제837조1항 :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지 않음,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 표명권 보장하지 않음 • 민법 제837조2항 : 가정법원의 면접교섭권 제한 및 배제규정 • 형사소송법 제87조 : 변호인등에 대한 구속의 통지 규정금지 • 형법 시행령 제166조	• 면접교섭권의 제한관련 민법 개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2항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 표명권 보장하지 않음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 자녀의 복리에 상치될 때 친권제한 •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응급조치와 보호조치 • 면접교섭권 유보조항 철회	• 2013년 친권자지정・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13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 • 2015년 면접교섭센터 2개소 설치

표 23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다.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내용에서는 요보호 아동의 시설 보호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정위탁제도나 그룹홈의 운영에 대한 활성화 노력에 대해 제2차 국가보고서에 언급하였다. 시설에 입소한 아동보다 가정에 위탁하거나 그룹홈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3・4차 국가보고서에서도 사업을 확대한다고 보고하였지만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점차적으로 아동 권리 인식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서는 대안양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아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는지 평가하는 것에 대해 보고하였다.

<표21> 가정환경과 대안양육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요보호아동발생 및 시설입소 • 시설보호에 의존, 대안 양육환경 개발 요구 • 가정위탁제도의 시범실시 및 활성화 문제점 논의	• 가정위탁제도 활성화 노력 • 그룹홈 운영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 기아, 미혼모, 미아, 비행아동, 가출아동, 빈곤아동, 피학대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복지시설, 치료소, 요양소 운영 • 가정위탁사업실시 • 그룹홈 사업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수급자에 아동 인정 •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마련 • 대안양육기관 종사자들의 아동인권교육 의무화와 아동권리교육 실시여부 평가

표 24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라. 입양

해외입양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가진 우리나라는 제1차 국가보고서에서 국내입양을 권장하고 불법입양에 대한 금지와 입양 알선을 금지한다고 보고하였다. 제2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유보조항 중 한 가지인 입양에 대해 노력하고 있고 미혼모입양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정부의 노력으로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입양특례법의 전면 개정으로 협약 제21조 (a) 항을 이행할 수 있었다.[10] 그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권고되어오던 '헤이그협약'에 2013년 서명하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10) 2011년 9월 민법 개정으로 입양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감독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 입양 전 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표22> 가정환경과 대안양육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입양)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입양	• 민법, 입양특별법에 근거 국내입양과 국외 입양으로 구분 • 국내입양의 절차 및 활성화 정책 제시 • 아동복지법 제18조6항 : 입양 알선금지규정	• 유보사항에 대한 노력 • 국내입양 및 장애아입양 활성화 • 해외입양절차 및 사후 관리 • 미혼모입양 활성화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 대안양육체제 강화 • 가정위탁과 국내입양 활성화 • 장애아동 양육지원비와 의료비 지원	• 2011년 입약특례법 개정 • 2013년 헤이그협약 서명 • 입양숙려제 도입 • 입양정보 공개제도 • 중앙입양원 설치 • 입양허가제 도입

표 25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6. 기초보건과 복지

가. 생존 및 발달

생존 및 발달의 제1차, 제2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아동이 기본적으로 생존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등 보건・의료 혜택에 대한 법률들이 나타나 있으며 아동의 사망률 중 가장 높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의 교통안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확충하고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였다.

<표23> 기초보건과 복지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생존 및 발달)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생존 및 발달	•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모자보건사업실시. • 아동사망원인 중 교통사고의 증가 •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 실천 • 교통안전진흥공단 교통안전교육제공 • 어린이보호구역지정 • 학교보건법, 학교급식지원	• 5세 이하 아동 기초예방접종무료실시 • 영유아예방접종률제시 • 모유수유실천 • 14세 이하 아동교통사고 사망자 수 제시 •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청소년위원회 설치 • 소아과전문의현황 •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 행태조사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 실종아동 예방 • 2005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실종아동전문기관 운영 • 드림스타트 사업 실시 • 보육료 지원사업 • 새터민 다문화 아동 교육지원사업 • 표준보육과정 개발 • 유치원교육과정 개정	• 학교보건법 개정 •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 모자보건사업을 통하여 국민행복카드 제공 • 건강검진 강화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 영양보충식품 지원사업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 도입 • 식품안전보호구역 설치

표 26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나. 장애아동

장애아동의 제1차, 제2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와 장애인복지종합대책을 설치 및 수립하고 장애인등록제를 실시하고 제3・4차에서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을 계획하고 장애아동수당을 인상한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그로 인해 많은 부분 불편함과 차별을 느껴야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고 특수교육 예산 증액을 보고하였다.

<표24> 기초보건과 복지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장애아동)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장애아동	• 장애인 복지 기본목표 관련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 고용 의무화, 장애인 등록제, 취업훈련기회, 공무원 채용 기회, 취업 알선, 지원혜택 소개 • 장애인대상 의료재활서비스 병원 및 치료와 교육 및 취업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 선천성심장병아동 민간에서 수술비용 지원	• 성인시설에 장애아동 입소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장애인 복지 종합 대책 수립과 장애인 복지발전5개년 계획 수립 • 장애인등록제도 실시 : 생계보조수당 및 보장구지급, 교육비지원, 각종 세금과 요금의 감면 등 경제적 부담경감 시책 실시 • 장애아동의 직업훈련기회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지원·장애인 대상 의료재활서비스 • 선천성심장병아동수술비 지원 및 치료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 장애인정책발전5개년 계획 • 장애아동 수당 인상 • 장애아동 양육 지원사업 •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 장애아동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확충 • 특수교육 예산 증액 • 장애아동 통합교육 확대 및 장애인식개선

표 27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다.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1차부터 제3·4차 국가보고서에서 단계적으로 사회보장 영역을 넓히고 장애아의 통합보육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장애아전담 시설의 설치를 확대

하였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영역이 넓어져야 하고 예산확충이 절실한데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서 아동복지 예산을 확충하고 2013년 전계층 영유아의 무상교육을 실시함을 보고하였다. 이는 제1차 국가보고서에서 영유아보육법의 저소득가족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자 보편적 복지의 행보라고 할 수 있다.

<표25> 기초보건과 복지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 헌법 제34조2항: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 노력 의무 •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 • 보육서비스: 영유아보육법 저소득가족에 대한 보육료 지원 • 정부의 보육사업 투자로 보육시설 증가 • 장애아 통합보육 기피: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설치 확대	•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 저소득층 가정자녀의 보육료 감면 • 보육정보센터설립 • 취학 전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 실시 • 보육시설 증설 투자 :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추진 • 보육의 질 향상 관심 • 장애아동 통합보육 기피로 인한 문제: 장애아전담시설 설치확대 •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노력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학교사업 • 아동발달지원계좌	• 아동복지 예산 확충 • 2013년 영유아 전계층 무상 보육서비스 • 긴급보육바우처 • 일·가정 양립제도 확충

표 28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7. 교육・여가・문화적 활동

가. 교육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차별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일어난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자리 잡으며 공교육만으로는 충분한 학습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경제적 상황으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그에 따른 아동 간 학습능력 격차가 벌어졌다. 유엔의 제2차 권고문에서는 OECD 국가 기준에 비해 무상의무교육 기간이 짧다고 권고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2004년부터 무상의무교육기간을 중등교육까지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교육으로 인해 아동의 놀 권리와 여가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가・오락 활동 및 문화적 활동'에서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자료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은 없지만 지역아동센터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표26> 교육・여가・문화적 활동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교육)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교육	• 교육법 :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3년 • 한국거주 외국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규정 • 고등교육기회보장을 위한 학자금 융자제도 • 유아교육 내용, 유아교육 취원률 제시 • 교육법제143조3, 145조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신설 및 특수 학급 증대로 인한 특수교육 수혜범위 확대 예정 •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	• 직업훈련제도 : 직업훈련기본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정(1997.12.24) • 근로청소년을 위한 교육 : 방송통신 고등학교, 산업체 부설중고등학교 및 특별학급 제도 • 소년원법 제29조제1항 : 교과교육소년원 설립 • 도서벽지진흥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중등교육 의무화 확대 실시 • 초,중학부 : 의무교육 • 특수학교에 국,공립학교와

	한 국립특수교육원 신설 • 근로청소년을 위한 학교제도 : 방송 통신학교, 산업체 부설학교 • 소년원법 : 비행학생에게 학력취득기회부여	동일수준 지원 • 특수교육 예산증대 • 특수교육기관 질적 향상을 위해 1994년 국립특수교육원 개원 • 국제기구를 통한 교육교류 협력활동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 직업정보제공 • 대안학교의 학습권보장 • 국제협력 강화 • 교육과정 개편 • 인권교육 강화	• 자기주도학습 전형 시행 • 입학사정관제 •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초등학교의 한글교육시간 확대

표 29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8. 특별보호 조치

가. 법적 분쟁상의 아동

법적 분쟁상의 아동의 제1차, 제2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주로 소년법의 내용에 대해 다뤘고 제3・4차 국가보고서에서도 2004년 소년원법의 개정 및 2007년 소년원법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소년수용자 및 보호 소년의 권리를 조금 더 생각해 마련된 제도 및 지원에 대해 보고했다. 그러나 2012년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신청자의 급격한 증가로 난민아동에 대한 내용이 더 필요하다.

<표27> 특별보호 조치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법적 분쟁상의 아동)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법적 분쟁상의 아동	• 보호처분: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 목적 • 소년법 제17조: 보조인선임 규정 • 형법 제8조: 14세미만 미성년자 행위 형사처벌 금지 • 소년법 제4조1항2호: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보호처분대상 • 소년법 제32조3항: 보호관찰처분 • 소년법 제58조1항: 소년사건의 심리에 관한 특별한 배려 • 소년원생 교화: 교육소년원, 직업훈련 소년원, 특별소년원 등의 기능별 분류 • 가퇴원자에 대한 집중적 보호관찰 및 사후 지도 • 소년범은 일반형사사건과 다른 절차와 특별한 대우 • 성인과 소년 수행자의 분리 : 현행법에 따라 20세 미만의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수용 • 보호 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면회, 서신교류, 외출 허가 • 헌법: 미성년자특별보호 규정 • 소년법: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최소연령 18세로 규정	• 소년법에서 소년 사건의 심리에 관하여 비공개 원칙, 신원비공개 • 소년법 제32조: 소년범에 대한 소년 보호사건에서 소년 보호자등에 대한 소년의 감호 위탁,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 처분 • 소년사건의 경우 가정 상황과 환경 등 고려 • 소년에 대한 실효성있고 구체적 선도 모색 • 소년원을 교과교육, 직업훈련원, 특별소년원으로 분류 운영 • 가퇴원자 집중적 보호관찰 실시, 사후지도 • 아동의 범죄행위에 관한 기본 법률: 형법과 소년법 • 소년법 제55조1항: 부득이한 경우에만 구속영장 발부 • 소년원법 : 소년법 제18조 : 감호시설위탁 조치결정. 16세 이상 남,녀 분리수용 •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 면회, 외출 허가 • 형사소송법 제33조1호 : 법률구조능력 취약한 미성년자의 보호 규정 • 갱생보호활동 • 아동학대신고 제도화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 2008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협의 • 2004년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단기보호관찰 1년(기존 6개월), 보호관찰 부과연령 10세로 하향.

	• 2004년 소년원법 개정, 소년원학교를 정규학교로 인정 • 2007년 소년원법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 2007년 소년 분류 심사원을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로 전환함 • 상담과 심리참여 제도도입	• 2011년 소년부 확대 설치 • 소년원 집단생활실 소규모실로 개선사업 추진 • 2016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 2013년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 201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표 30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1·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5·6차 국가보고서 재구성.

제2절 국내 아동복지 정책 현황

제3·4차 국가보고서 제출 후의 권고 사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제정 및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28> 아동복지법 제정 및 개정 현황 (2011~2016)

구분	시기	법령	제·개정 내용
신규	제정 2011. 7. 4 시행 2012. 7. 1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서적 빈곤상태에 있는 아동을 위한 기본계획과 추진전략 수립으로 통합적인 사회복지지원체계 마련
	제정 2012. 1. 26 시행 2013. 1. 27 개정 2016. 2. 3	학교체육진흥법	•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제정 2012. 2. 10 시행 2013. 7. 1	난민법	• 난민인정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지원 • 난민아동의 초·중등

			교육 이수 기회 제공
	제정 2014. 1. 28 시행 2014. 9. 29 개정 2016. 5.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긴급한 조치 및 보호, 가해부모에 대한 법원명령의 치료·상담·교육수강제도 도입 등 가정내 아동학대 문제에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 •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선임 특례 •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설
	제정 2014. 3. 11 시행 2014. 9. 12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선행교육 규제로 인하여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제정 2014. 3. 23 시행 2015. 3. 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법률	• 이혼가정 자녀의 안정적 생활수준 유지 보장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도입
	제정 2014. 5. 28 시행 2015. 5. 2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도입 • 정부, 지역, 민간 협업 통한 학교 밖 사각지대 해소
개정	2011～2016	아동복지법	• 매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의무화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10년간 취업제한 •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금지 • 보호대상아동의 사전조사, 상담기능 강화
	2011～2015	입양특례법	•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제 도입 • 국외입양 아동의 권익보호 위한 사후관리 도입
	2011～2016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의 주체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 취약위기가족의 정서적, 경제적 자립역량

			지원 강화
	2011～2016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유해업소 범위 확대, 유해약물 등 제공 금지 • 환각물질 중독전문치료기관 종사자 비밀누설금지
	2012	형법	• 유사강간죄 신설 •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하는 고소조항 폐지
	2012～20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도입
	2012～2016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의 아동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정보 제공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화통화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사용 활성화
	2012～2016	한부모가족지원법	•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권익 보호 조치 확인 의무
	2012～2014	민법	• 미성년자의 입양 허가제 도입 • 자녀를 학대하는 친권자의 법원의 재판 제도, 친권의 일시정지 제도,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의 도입
	2012～2016	청소년복지지원법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자립지원관 기능을 규정 •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1호를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청소년복지시설로 규정
	2012～2016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 차별금지, 의사표명 및 결정권 부여 • 근로기준법상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
	2012～2016	유아교육법	• 무상유아교육을 취학전 3년의 모든 유아에게 확대 •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부담 금지
	2012～2016	초중등교육법	• 학력인정학교의 명칭에 따른 사회적 차별 해소 •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 경력이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결격사유로 추가
	2012～20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피해학생의 치료위한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부담 및 구상권 행사, 피해학생 재심청구 허용 등 •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주기, 결과의 공표, 관계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 규정
	2012～2016	학교보건법	• 학교폭력 징후 사전발견 위한 정신건강상태 검사 •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에게 통보
	2012～2016	학교안전사고 예반 및 보상에 관한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급 규

		법률	정,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점검, 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 • 학교시설에 대한 학부모의 안전점검 참여 보장
	2013～2014	가사소송법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친권의 제한 제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항에 추가
	2013～2016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 미성년 후견인 및 감독인의 개시, 경질, 종료에 관한 신고제도 도입 •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신고 가능, 자녀의 생명권 보장
	2013～2016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 광고 제한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운영 • 알레르기 유발가능 식품 표시 의무 부여
	2013～2016	청소년활동진흥법	• 아동 및 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할기관 신고 의무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실시 • 청소년수련시설 대표 및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2013～2016	영유아보육법	• 무상보육 근거 마련 • 아동학대로 금고이상 실형 선고받고 10년 경과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불허용 • 보육교직원의 영유아에 대한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 금지
	2013～20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가족 등과의 전화통화 허용 등 보호소년 인권 강화 •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의 다양화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및 처우 환경 조성
	2014~2015	소년법	•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표 31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보건복지부, 2017, p.103.

2017년 12월 정부에서 아동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 지급 시기는 9월로 변경되며 많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상위 10% 소득 가정의 자녀들은 '선별적 복지'인 해당 정책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아동수당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한국,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31개국이 이미 제도를 도입했다. 이 중에서도 보편주의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국가는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을 포함하여 20여 개국이다. 선별적 지급으로 아동수당 예산 1조1000억 원에서 1000억 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아동의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18세 미만에게 수당을 주되 학생이나 구직자, 중증 장애인 등이 속할 경우에는 수급 연령을 24~25세로 연장하기도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지원대상을 0~5세의 전체 아동으로 넓혀야 한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축소시키는 것보다 불필요한 재정을 줄여서라도 연령의 영역을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넓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후 제출한 네 차례의 국가보고서를 8개의 영역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다양한 입법과 정책 및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 제1차 보고서에서는 형식적인 보고서와 같이 구체적인 법안이나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제2차 보고서에서는 제1차 국가보고서와 동일한 내용도 있었으나 제1차 국가보고서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설명에 치우쳤고 아동의 권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국제법의 효력을 갖기는 어려우며 아동의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아 이 보고서 역시 형식적인 형태에 가깝다고 보았다. 제1차, 제2차 국가보고서에서 인종차별이나 민족 간의 분쟁이 없고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고에서는 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 부족과 협약 비준 초기의 부실함이 보인다.

제3·4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좀 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아동 관련법의 제·개정이 이뤄지며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3가지 유보조항 중 한 가지였던 부모면접교섭권의 철회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적극적인 모습이며 아동의 권리증진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보인다. 혼인 가능 연령의 경우에도 민법 개정을 통해 남녀 동일 18세로 규정하며 차별금지조항과 아동권리협약의 기준에 부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다문화가정이 늘게 되었는데 제3·4차와 제5·6차 국가보고서의 여덟 가지 영역에서 다문화 및 취약계층의 항목이 늘었음을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남과 비례로 다문화가정의 이혼도 늘고 있는데

그로 인해 다문화가정이 취약계층이 되는 경우와 한부모가정이 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취약계층 및 한부모가정이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관심과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하다.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세 가지 유보조항 중 남은 한 가지 조항인 아동의 상소권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실 상황과 아동의 관점에서 해당 조항 유보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기초보건과 복지에 대한 국가보고서 영역에서 2013년 영유아 전 계층에 대해 무상 보육서비스 실시하는 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아동의 정의인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보편적' 복지를 실시했다고 보인다. 제5·6차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이 좀 더 마련되었다. 형식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법의 제·개정보다는 아동의 입장에서 더 나은 발전이다. 또한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서는 각 영역에 대한 정책과 한계에 대해 파악, 분석하여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발의를 준비하는 등 향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복지 발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 여겨진다.

아동을 위한 복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거시적인 정책 과제로는 '보편적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과 시설, 전문 인력의 확충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아동수당이나 돌봄교실의 경우 재원과 시설,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아동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은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아직 많은 부분 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만 부모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법적 근거가 없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

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법의 제19조 3에 의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은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우며, 육아휴직이 가능한 근로자 역시 사내 분위기로 인해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경우와 쓰게 되더라도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비슷한 맥락으로 많은 맞벌이 가정의 아동의 경우 하원 혹은 하교 후 가정에서 돌봐줄 부모의 부재로 학원을 돌고 도는 일이 많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돌봄 교실 이용을 원하는 학부모가 많지만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오랜 기간 기다려야만 이용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학교 수업 시수를 늘려 아동이 학교에서 더 긴 시간 머무르게 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수업의 질적인 부분에서도 부정적이고, 아동 역시 원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을 놀이 위주 프로그램과 야외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방임되는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과 동시에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 운영 사업장 형태의 놀이시설 또는 체험시설이 방과 후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돌봄 사업과 연계를 맺으면 보조금 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교사상이 남아있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복지 정책의 개선이 되려면 국민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위한 인식이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아동

권리 증진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이다.

첫째로 아동복지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며 더불어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보살펴야 한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아동복지시설이 있지만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양질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아동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 아동복지는 우리나라의 복지 분야 중에서 관심과 예산이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권고했듯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아동복지 예산이 최하위에 머물러있다. 예로써 아동보호시설의 국가 지원금은 현실과 맞지 않는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대다수의 시설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매년 정부 예산안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아동복지에 관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보호 아동의 양육은 국가의 100% 책임이 있지만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그룹홈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충분한 정부의 예산안 확보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2015)에 따르면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5년간 총 소요 예산은 약 4.5조 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아동복지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권한에 맡기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아동복지 예산이 차이가 나면서 보편적 복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편성된 예산도 보육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요보호 아동에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아동복지 예산의 확충이 절실하다.

셋째로 아동복지시설의 정비 및 소규모화가 필요하다. 둘째에서 언급했듯이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양질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전문인력 1명당 관리해야 하는 아동의 수가 초과되는 일이 많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시설의 규모에 따른 아동양육상태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소규모시설의 아동이 법인시설 아동보다 성취적, 개방적, 친애적, 자율적이

고, 구성원에 대해 긍정적이며, 응집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집단보호 형태를 소규모 가정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아동에게 가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이태수 외, 1997).

넷째로 아동이 주체가 되는 법안들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 예를 들어 출산장려정책이나 육아휴직 등은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라기보단 어머니인 여성 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법으로써 보호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 주체가 되는 아동복지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아동 학대에 관련한 내용이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보편적 아동복지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아동 정책 수준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표29> 국내 아동복지 관련 법

구분	세부내용
아동과 직접 관련된 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청소년 기본법 등
공공부조, 사회복지 관련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
보건, 의료 관련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정신보건법, 보건소법, 학교보건법 등
교육 관련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등
노동 관련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최저임금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법무 관련법	소년법, 소년원법, 보호관찰법, 민법, 호적법, 가사소송법 등

사회보험 관련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행・재정 관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지방재정법

표 32 출처: 노명희 외,『아동복지론』, 정민사, 2014(재인용).

다섯째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국가로서 국민에게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할 의무가 있다.[11] 어른뿐 아니라 아동권리협약 아동 역시 자신의 권리를 알 권리가 있으며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배울 수 있도록 어른이 도와주어야 한다.

아동 관련 직업 종사자의 경우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또한, 고학력층일수록 인지율이 높았으며, 아동권리 교육 경험자에서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인을 상대로 한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인지하는 경우는 47.9%, 아동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26.6%로 나타났다. 두 경우 모두 인지 경로는 TV, 신문 인터넷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가 효과가 높았다.

11)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그림3> 아동권리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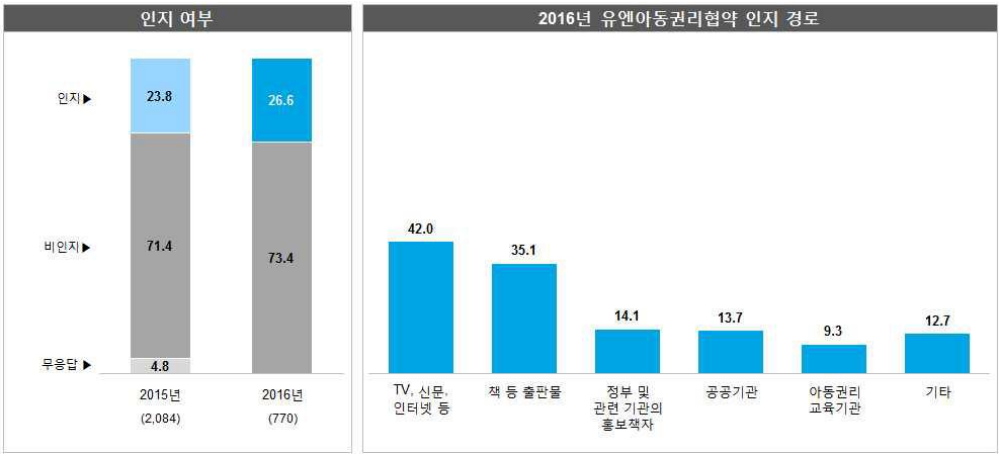

그림 4 출처: 장화정,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6.

<그림4> 아동권리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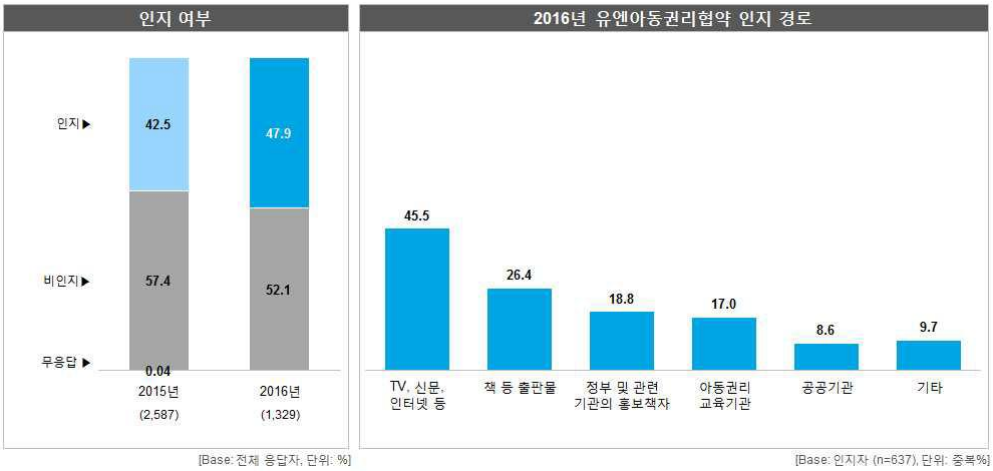

그림 5 출처: 장화정,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33.

아동권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98.7%).

아동의 아동권리교육 경험률은 48.4% 수준이며 교육 장소는 대부분 학교였다.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

교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해 공부해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비교적 노출되기 쉬운 미디어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아동권리 홍보가 필요하다.

<그림5> 아동의 아동권리교육 경험과 아동권리 교육경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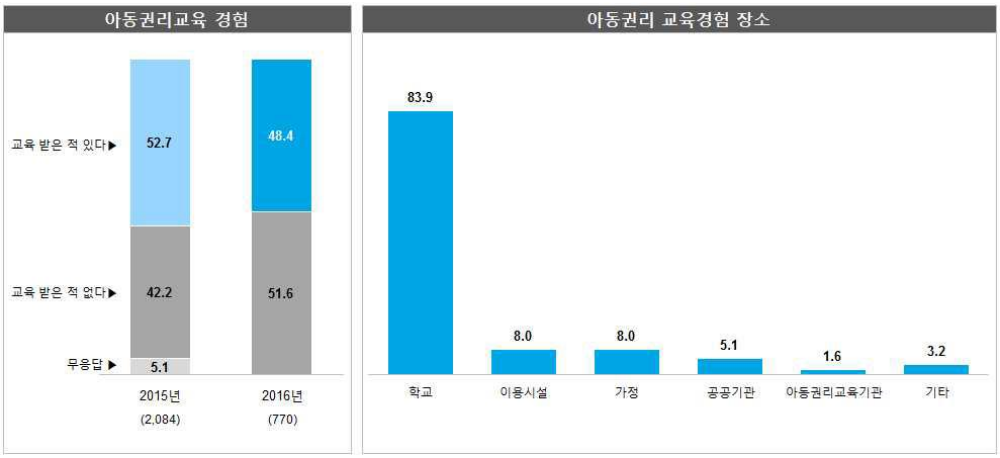

그림 6 출처: 장화정,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38.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이 제 권리를 누리며 바르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 부모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아동권리협약의 목적은 결국 아동이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의 주체가 되어 권리를 요구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어른들이 나서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 관련 법안은 주체자인 아동의 사회적인 위치상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어렵고 제정, 개정되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은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 배경에는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국제협약이 있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국가가 아동의 권리증진과 복지에

관심을 가지며 관련 법제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오롯이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는 다른 분야에 미비하며 국민들의 인식 또한 낮다. 인식이 바뀌는 것엔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국가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펼쳐야 한다.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s Education Training)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전 사회 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 및 정부는 인권교육훈련에 대하여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협약에 대한 홍보 의무를 말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생애주기에 있어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해야 바르고 어진 성인으로 자라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비약적인 국내 아동복지의 발전으로 아동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동양문헌>

단행본

김이영 외, 『아동권리와 복지』, 양성원, 2017.

김춘경, 『아동학 개론』, 학지사, 2010.

노명희 외 , 『아동복지론』, 정민사, 2014.

석인선 역, 『인권의 역사』, 한울, 1995.

이철수 외, 『사회복지학사전』, Blue Fish, 2009.

이태수 외,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연구』, 인간과 복지, 1997.

전광석, 『한국 헌법론』, 법문사, 2007.

학술지

김승권,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보건복지포럼, 2007.

김승훈,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 인도법논총 제 29호, 2009.

김연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1.

김영지 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김용하, 『UN아동권리선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6.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학회, 1996.

대한민국 정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최초 보고서』, 외교부, 1994.

대한민국 정부,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 외교부, 1999.

대한민국 정부,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통합 국가보고서』, 외교부, 2008.

대한민국 정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정책공감, 안전행정부, 2013.

대한민국 정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보건복지부, 2017.

아동권리과,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수립』, 보건복지부, 2015.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한국유니세프 연차보고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02.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한국유니세프 연차보고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03.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외교부, 2002.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와 권고문Ⅰ』,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2006.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와 권고문 Ⅱ』,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2006.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2010.

이배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한국아동권리학회, 1997.

이혜원,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2001.

장화정,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정인섭,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한국 판례와 학설의 검토』, 서울국제법연구(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2015.

정진경, 『UN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및 실천적 수용성 : 아동복지법

과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제14권 제2호, 한국아동권리학회, 2010.

황정원, 『우리나라의 다문화 학생 현황』, 교육개발 2016년 9월 통권 197호, 한국교육개발원, 2016.

학위논문

강민지,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나타난 아동권리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학 석사학위논문, 2010.

민진홍,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이 국내 아동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논문, 2011.

박한비,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아동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 경북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3.

<서양문헌>

학술지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69.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1991),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Initial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UN Doc.CRC/C/5. 1991.

Considerations Working Group, E/CN.4/L.1542, S. Detrick(ed), supra note 24, 1980.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Doc. A/RES/44/25, 1989.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1922.

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1924.

O'neill. O. Children's Rights and Children's Lives, in : P. Alston et al.(eds.), Children's Rights and the Law, 1992.

<인터넷 사이트>

http://www.law.go.kr

https://www.unicef.org/crc/

http://www.un.org/en/documents/

ABSTRACT

Research on a way to improve Domestic Child Welfare System based 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hn, Hyeji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The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child welfare for the improvement of children's rights in Korea based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rights of children has been established after over two decades of worldwide attention to human rights. Until then, the child was on the side of the weak and was not entitled to his own rights. This year marks the 26th anniversary of the ratif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was unanimously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in 1989 and ratified by most countries in the world. As a recommendati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Korea has been made efforts for the child for the past 26 years.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a lot of efforts with regard to the rights and welfare of children because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re are still many cases where the rights of children are not recognized as 'natural'. Children are not supposed to be simply defined as an immature human being below the age of puberty. Since children are reflection of our past and future, we have to rethink about

what children's right is and take it more seriou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ights of children centering on literatures about children 's rights. The report compares and analyzes four national reports on the analysis of the eight areas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reviews the domestic child welfare laws develop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spective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our national reports, it can be seen that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domestic child welfare laws.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do not have a strict legal instrument for guaranteeing children's rights because they have more recommendation provisions than those of obligatory ones. In order for children to be guaranteed their rights, concrete and compulsory legislative measures are needed in accordance with the child's reality, centered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oreover, the government needs to actively promote and educate the public as public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needs to be backed up in order to guarantee children's rights.

An analysis of the country's compli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Report and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showed that there were many selective policies for all children under 18 to enjoy their rights. In order for a child to be human and happy, universal welfare without discrimination is important.

Key word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hild Welfare, Rights of Child,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